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KASS 정밀위치정보 제공방안 확대 및 활용증진 연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2023. 5.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사무관	장경준	(044)201-4350	(044)201-5637
		주무관	한지성	(044)201-4358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KASS 정밀위치정보 제공방안 확대 및 활용증진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3. 과업 운영 예산 :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의동향) ICAO는 GPS 신호를 보정하는 위성항법기반시스템(SBAS)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개발·확대 운영을 권고
 -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 등 인공위성의 오차정보를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광범위한 지역에 제공하는 위성기반 광역보정시스템(위성방송)
 - (해외) 유럽 SBAS는 항공분야 외 철도·해양·농업·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SBAS 활용을 증진 중이며, 매년 분야별 시장 분석 시행
 - (국내) 우리나라도 위성을 이용하여 전 국토에 정밀 GPS 위치 보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형 SBAS(KASS)를 구축 추진 중
 -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SBAS의 명칭
 - '14년 기술개발 착수, '22.6월 항공위성 1호기 발사성공, '22.12월부터 KASS 신호 1차 제공 중이며 '23년말 항공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 * KASS 신호 1차 제공('22.12월) → 안정화 이후 2차 제공('23.6월) → 항공용서비스('23.말)
 - (연구목적) KASS 정밀위치정보를 위치기반 산업분야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공체계 확대도입 및 활용증진 전략 연구
 - * KASS 정밀위치정보를 현재 위성으로만 제공 중이나, 위성 외 유·무선 통신망 등을 이용해 다양한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칭	1
2. 과업기간	1
3. 과업 운영예산	1
4. 과업목적 및 필요성	1
II. 과업의 내용	2
1. 일반사항	2
2. 과업의 세부내용	2
III.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4
1. 입찰 참가자격	4
2. 낙찰자 결정방법	4
3. 평가기준	6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1
1. 제안서 제출	11
2. 제출 서류	11
3. 제안서 작성 요령	11
4. 제안서 작성 방법	12
5. 관련 서식	14

II.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누락 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 통계자료는 우리 정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다. 용역 수행 중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적용 기준들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용한 자료 및 기준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기관(GPS 위치정보 산업분야, 항공사 등) 및 이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용의 안정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해외 SBAS 위치정보 활용분야 조사 및 분석

- 1) 미국(WAAS), 유럽(EGNOS), 인도(GAGAN), 일본(MSAS) 등 해외 SBAS 구축운영 현황 및 기술 고도화 계획 등 동향 조사
 - 2) 해외 SBAS의 항공분야 적용현황, 철도·해양·위치기반서비스(LBS) 등 타 분야 적용·활용 사례 수집 및 해외 편익 자료 조사
- * 유럽위성항법정 등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활성화 조사·분석

나. KASS 인터넷기반 정보제공 체계 도입 방안 제시

- 1) KASS 정보 이용의 접근성 제고, UAM 활용성 증대 등*을 위해 유·무선통신망을 통한 고품질 KASS 데이터 정보제공 방안 조사
- * KASS 전용 수신기(HW) 없이 KASS 데이터를 SW로 처리, ▲도심지 UAM-드론의 단절없는 정밀 항법정보 수신, ▲고층빌딩 밀집지 등 KASS 전용위성 음영구간 해소

- 2) KASS 인터넷 기반 제공을 위한 **한계점, 기술체계 현황, 국내 사용자 대상의 활용수요, 기대효과 등 조사분석**
- 3) 스마트폰 분야 안드로이드 OS, iOS 기반의 **스마트폰 기종별 GNSS 원시 데이터+KASS 지원 가능성 조사 및 기술 협의체** 구성
 - * KASS 개발 연구기관, 인터넷기반 제공 시 수요기관 등 대상 의견수렴 및 기술 자문
- 4) KASS 인터넷기반 정보 제공 **타당성, 국내 이동통신망(LTE등) 이용 정보제공 플랫폼 체계 등 기본개념 및 체계구축 기획안** 제시
 - * 시스템 구성 체계, SW 개발 비용 및 수요자(예측치) 대비 구축장비 등 수량비용 등 포함

다. 국내 KASS 서비스 적용 분야별 활용증진 전략 마련

- 1) 국내 GNSS(GPS/GLONASS 등 단독 또는 다중위성)와 보정정보 사용 등 시장 환경, 기술현황 등 조사 및 SBAS 단독 사용 시 장단점 등 분석
 - * 국내외 GPS 등 보정정보 제공 사례 조사를 통한 측위기술의 장단점 분석 등
- 2) 국내 KASS 서비스 시행 시 일반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분야(핸드폰, 지도, 내비, 레저 등) 및 관련 산업분야* 조사, 필요 요구사항 도출
 - * GPS 등 칩셋 제조사, 이동사, 핸드폰, 지도, 내비, 해양, 교통, UAM, 드론 등
- 3) KASS 활용이 가능한 **산업분야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증진**을 위한 체계·일정·예산구체적 방안 등 **도출** 및 활용증진 지원 **전략 마련**

라. 국내 KASS 정밀위치서비스 경제적 편익 및 기대효과 등 검토

- 1) KASS 항공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분야별 편익 등 경제성 분석 최신회*
 -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13.12)를 기준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경제적 편익 재 산출
- 2) 항공·교통·해양·위치기반 분야 등 KASS 기대효과 도출 및 현행화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

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5인 이상)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종합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라.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1.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름

3. 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업체평가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5	정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신용도 (5)	·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배점기준		5		
		배 점	배 점			
인력·조직 (5)	·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여부의 적정성 등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5	정량 평가	
		②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5			
기술·지식 (자격) (10)	· 참여기술자 자격부유 현황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0	5	정량 평가	
		④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5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통산·회행·감시(CNS) 분야 석사·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	① 5명 이상		5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② 4명		4.5
③ 3명				4.0		
④ 2명 이하				3.5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안전시설 분야 업무 경력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 점			
			① 20년 이상	5		
			② 15년 이상·20년 미만	4.5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4.0		
④ 10년 미만	3.5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업무 (제안) 평가	사업 이해도 (10)	· 운영 사업 목표 및 과업지시서 이해도 ·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의 부합도	10	정성 평가
	추진전략 (10)	·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합리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사업수행 계획(15)	· 과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5	
	사업수행 방법 (20)	· 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 KASS 정밀위치정보 제공방안 조사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KASS 서비스 적용 분야별 활용증진 전략 마련에 대한 적정성 · KASS 항공용서비스 이용 성능분석 방안 제시를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및 적정성	20	
	사업관리 (15)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6	
		· 사업관리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4	
		· 보안대책의 적정성	5	
사후관리 (5)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5		
합계(100)		100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정성평가항목 점수부여 방법

가) 정성평가의 점수는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으로 배점한다.

<입찰자 수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기준표>

업체수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1	1	1	-
5개사	1	1	1	1	1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 8개사 이상인 경우 등급별 배분은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매우미흡(10%)로 한다.

나)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나. 가격평가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계약예규 제538호, '20.12.28.)」에 따름

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위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답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답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이 평가 기준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문의처

- 담당자 :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한지성 주무관
- 연락처 : 044-201-4358(E-Mail : hjs4869@korea.kr)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접수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 서류 : 입찰공고 참조

3.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 사항)

- 제시된 제안서 항목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한다.
- A4(210×297mm) 용지에 세로 방향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한다.
- 제안서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 한 사본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 한다', '고려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 11 -

항 목	작 성 방 법
	4.4 성과물 및 성과물 산출계획 제시
IV.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방안	1. 사업관리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2. 보안대책	2. 보안대책 방안 및 관리체계 제시
3. 과업보완 방안	3. 과업보완 방안(범위, 기간 등)을 제시
V.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13 -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해당 입증자료가 제출되어 명확하게 이행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만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I. 개요	
1. 제안 개요	1.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요약 작성
II. 제안사 일반	
1. 경영상태	1.1 회사 일반현황 등 회사 소개 작성 1.2 최근년도 경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평가자료 기준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1 용역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제시 2.2 참여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업무분장 포함
3. 기술·지식(자격)	3.1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 제시 3.2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제시 3.3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제시
III. 사업수행	
1. 사업의 이해	1.1 용역 사업의 목표 제시 1.2 용역의 범위 및 특징 제시
2. 추진전략	2.1 용역 추진전략 제시
3. 사업수행 계획	3.1 과업별 수행계획 및 투입인력 제시
4. 사업수행 방법	4.1 과업별 단계별 방법, 사용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을 제시 - 과업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제시 4.2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객관성 4.3 과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12 -

5. 관련서식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회 사 연 력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14 -

참여기술자 이력

□ 참여분야 : 000 분야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학위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참여중인 사업현황							
사업명	참여(예정)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참여 인력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용역 과업참여 인력만 기재(주요경력은 본 용역 과업내용과 관련된 경력만 기재)

입찰참가제한 지정내용

처분종류	업체명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	사유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보안각서

사업명 :

본인은 본 사업(또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또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알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본 사업(또는 입찰)을 수행 및 이행 기간 또는 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국토교통부 보안관계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한다.
3. 본인은 본 사업(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주게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어떠한 처벌에도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사업(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기관에 있거나, 귀속됨을 알고 발주자의 별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약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